상해·업무방해·재물손괴·절도·폭행(취소)·치료감호

[창원지법 2009. 11. 27. 2009고합119, 171, 175, 217, 326, 327, 2009감고3, 5, 7, 8, 14, 15]



【판시사항】

충동조절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러 치료감호가 청구된 사안에서, 피치료감호청구인에게 치료감호시설에서의 치료의 필요성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청구를 기각한 사례

【판결요지】

입원치료를 받는 등 충동조절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10여 회에 걸쳐 업무방해, 재물손괴, 상해, 절도 등의 범행을 저질러 치료감호가 청구된 사안에서, 피치료감호청구인에게서 정신병적 증상은 확인되지 않고, 다만 과도한 집착이나 무시당하는 상황 등을 참아내지 못하여 범행에 이르렀고, 그 범행의 사회적 위험성 및 정도, 치료감호처분의 결정에 있어 특히 고려되어야 할 비례의 원칙, 치료 및 개선가능성 등을 종합해 볼 때, 치료감호시설에서의 치료의 필요성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청구를 기각한 사례.

【참조조문】

치료감호법 제2조, 제12조 제1항

【참조판례】

헌법재판소 2005. 2. 3. 선고 2003헌바1 전원재판부 결정(헌공101, 205)

【전문】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 피고인

【검사】 박석일

【변 호 인】 변호사 배호창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08. 8. 18.경 재물손괴의 점은 무죄
- 이 사건 치료감호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법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

【이유】

]

[이유]

1

[이유]

]

[이유]

]

[이유]

]

【이유】

]